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 변경대비표

■ 개정시행일 : 2023년 6월 29일

■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1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</p> <p>① 가. <u>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</u></p> <p>라. (3) 은행은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경우</p> <p>마. 거래소, 예탁결제원 <신설>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</p> <p>③ 아. <u>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</p>	<p>1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</p> <p>① 가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단기 사채 등</u></p> <p>라. (3) <u>은행</u>이 (1) 또는 (2)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경우</p> <p>마. 거래소, 예탁결제원, <u>전자등록기관</u> (<u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.</u>)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</p> <p>③ 아. <u>사모집합투자기구의</u>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(<u>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u>)</p>	<p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내용 반영</p> <p>오류 수정</p> <p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내용 반영</p> <p>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5항 반영</p>

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2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</p> <p>• <u>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</u></p>	<p>2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</p> <p>• <u>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</u></p>	<p>기간을 구체화</p>

■ 미공개중요정보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2. 거래대상 대상목록</p> <p>① 가. 「거래제한 대상목록」 <u>가목에</u>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해당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은행에 의뢰한 경우 및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상대방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</p>	<p>2. 거래대상 대상목록</p> <p>① 가. 「거래제한 대상목록」 <u>제1항 가목에</u>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해당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은행에 의뢰한 경우 및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상대방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</p>	<p>조항을 구체화</p>

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1. 고유재산운용업무 등의 정보교류 차단</p> <p>① 가. 고유재산운용업무·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과 <u>집합투자업·신탁업</u> 간의 경우</p> <p>② 나. 고유재산운용업무·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중 전담중개업무와 <u>전문투자형</u> 사모집합투자기금 등의 투자자 재산을 <u>전담중개하는 업무</u>로서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 간의 경우</p>	<p>1. 고유재산운용업무 등의 정보교류 차단</p> <p>① 가. 고유재산운용업무·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과 <u>집합투자업(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 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신탁업(신탁재산을 금융투자 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·신탁재산 중 금융투자 상품을 보관·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 간의 경우</p> <p>② 나. 고유재산운용업무·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중 전담중개업무와 <u>일반</u> 사모집합투자기금 등의 투자자 재산을 <u>전담중개업무</u>로서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 간의 경우</p>	<p>정보교류 차단 업무 영역의 범위 구체화</p> <p>자본시장법 제6조 제10항 반영</p>
<p>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</p> <p>② 1) 기업금융업무와 <u>다음 각각의</u> 업무 간의 경우 가. 주권비상장법인(「자본시장법」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 법인인 제외한다) 또는 코넥스 시장에 <u>출자</u>,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,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</p>	<p>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</p> <p>② 1) 기업금융업무와 <u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업무 간의 경우 가. 주권비상장법인(「자본시장법」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 법인인 제외한다) 또는 코넥스시장에 <u>주권을 상장한 법인에 출자</u>,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,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</p>	<p>용어를 명확히 수정</p>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마. <u>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</u>구에 출자하는 업무</p>	<p>마. <u>사모집합투자기(자본시장법 제249조의 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u>에 출자하는 업무</p>	<p>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5항 반영</p>
<p>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 ② <u>3) <신설></u></p>	<p>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 ② <u>3)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단기사채등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·매출·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</u></p>	<p>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 다목을 구체적으로 반영</p>
<p>3. 계열회사등과의 사외정보교류 <u>차단</u></p> <p>은행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, <u>그 밖에 회사</u>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</p> <p>① <u>사외교류금지</u>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 <u>가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닐 것</u> <u>나. 계열회사에</u>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<u>상당한 이유가</u> 있을 것 <u>다.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</u> <u>라.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</u> <u>라. <신설></u></p> <p>마.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<u>바. <신설></u></p>	<p>3. 계열회사등과의 사외정보교류 <u>차단시 금지행위</u></p> <p>은행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를 <u>포함한 제3자(이하 “계열회사 등”이라 한다)</u>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① <u>정보교류차단 대상</u>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 <u>가. <삭제></u></p> <p><u>가. 계열회사 등에</u>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<u>정당한 사유가</u> 있을 것 <u>나.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</u> <u>다.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</u> <u>라.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·관리할 것</u></p> <p>마.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<u>바.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</u></p>	<p>제목과 내용의 구체화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

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<p>[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]</p> <p>① <u>사내교류금지</u>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<u>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</u></p> <p>바. <신설></p>	<p>[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]</p> <p>① <u>정보교류차단 대상</u>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. 다만,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<u>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</u></p> <p>바. <u>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</u>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,</p> <p>임직원의 준수사항 보완</p>